

# 조 례 안 예 고

통영시의회 공고 제2024- 20호

##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3일

통 영 시 의 회 의 장



1. 자치법규명: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제안이유

통영시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을 통해 토종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풍토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종합계획 수립·추진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년 5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서면, 팩스 등

다. 의견제출 사항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서 제출처: 통영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1) 주 소: 우)53040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의회)

(2) 전화번호: 055-650-2943(Fax. 055-650-2999)

##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의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종농산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의 야생종과 나목의 재래종 중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 시장은 토종농산물의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통영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
2. 토종농산물 품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토종농산물 품종 육성·보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종농산물 판매·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5. 토종농산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토종농산물 채종포·전시포 사업
2. 토종농산물 증식을 위한 하우스 시설 및 농자재 지원
3. 토종농산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4.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추진 민간단체 지원
5. 기타 토종농산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기준과 지원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원사업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를 준용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와 이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삭제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업유전자원"이란 농업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난자(卵子)·수정란(受精卵)·포자(孢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真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삭제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호 ~제11호 생략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2항~제8항 생략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제2항~제11항 생략